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
2021. 12. 8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

(교통건설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○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가. 기금사업의 목표

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통행불편 최소화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 도모

나.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손상된 도로정비

불량맨홀 정비, 굴착복구 업무수행 순찰차량 운영

5. 2022년도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ⓐ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 ⓔ=ⓓ+ⓐ	비고
		수입ⓑ	지출ⓒ	증 감 ⓓ=ⓑ-ⓒ		
도로굴착 복구기금	2,155,855	1,080,022	1,312,607	△232,585	1,923,270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1,080,022	931,145	148,877
공공예금 이자	20,022	29,145	△9,123
원인자 부담금	1,060,000	902,000	158,000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1,312,607	1,111,000	201,607
일반운영비	12,607	11,000	1,607
도로굴착 복구공사	1,000,000	1,000,000	0
노후포장 도로정비	200,000	0	200,000
불량맨홀 정비	100,000	100,000	0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 조성으로 함.

○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

- 수입내역

공금예금 이자수입	2,002만원
원인자부담금	10억 600만원

- 지출내역

일반운영	1,260만원
도로굴착복구공사비	10억원
노후포장도로 정비	2억원
불량맨홀 정비	1억원

○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 복구,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운용 방향을 수립하였으며, 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▢ **「지방자치법」**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▢ **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**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▢ **「도로법」** [시행 2021. 2. 5.] [법률 제16954호, 2020. 2. 4., 타법개정]

제91조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

▢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7.18>

제2조(기금의 재원)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「도로법」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<개정 2016.7.18>
2. 기금의 이자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. <개정 2016.7.18>

1. 도로굴착복구공사
2.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(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)
3.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·연구·감독업무
4.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